

[별표 2]

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(제3조 관련)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1. 전선 및 전원 코드	대상 없음	
2. 전기기기용 스위치	전기기기용 제어소자	① 온도조절기 ② 온도과승방지장치 ③ 써미스터 ④ 자동압력 스위치 ⑤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 ⑥ 전기구동 모터 기동릴레이 ⑦ 에너지 레귤레이터
	비고) 기계·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.	
3.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	대상 없음	
4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대상 없음	
5. 전기용품 보호용부품	대상 없음	
6. 절연변압기	가. 고주파웰더	① 고주파웰더
	나. 전기용접기	① 전기용접기 ② 권총형아크접착기
	비고) 정격용량 5kVA 이하의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.	
7. 전기기기	가. 과일 껍질깎기	① 과일껍질깎기
	나. 감자 탈피기	① 감자탈피기
	다. 전기정미기	① 전기정미기
	라. 전기 빵 자르개	① 전기 빵 자르개
	마. 전기용해기	① 왁스 용해기 ② 초코렛 용해기 ③ 파라핀 용해기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7. 전기기기	바. 애완동물 목욕기	① 애완동물목욕기
	사. 이미용기기	① 전기머리손질기 ② 두피모발기 ③ 샴푸기기 ④ 모발가습기 ⑤ 손톱정리기 ⑥ 전기면도기 ⑦ 전기이발기 ⑧ 안면사우나기
	아. 전기 주류 숙성기	① 전기주류숙성기
	자. 전기시계	① 전기시계
	차. 적외선 ·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	① 적외선방사 피부관리기 ②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
	카.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	① 전기이발용의자 ② 전동침대 ③ 전기온열의자
	타. 컴프레서	① 컴프레서
	파. 전기온수매트	① 전기보일러 ②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 침대
	하. 구강청결기	① 전동칫솔 ② 구강세척기
	거. 전기분수기	① 전기분수기
	너. 투영기	① 슬라이드 투영기 ② 필름스트립 투영기 ③ OHP ④ 필름투영기
	더. 해충퇴치기	① 해충퇴치기 ② 전기포충기
	러. 전기집진기	① 전기집진기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7. 전기기기	머. 착유기	① 착유기
	버. 서비스기기	① 전기광택기 ② 수하물보관기 ③ 지폐교환기 ④ 동전교환기
	서. 전기에어커튼	① 전기에어커튼
	어.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	① 팬코일유닛(fan coil unit)
	저. 폐열 회수 환기장치	① 폐열 회수 환기장치
	처. 게임기구	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시물레이션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기
	커. 전동형 롤스크린	① 전동형 롤스크린
	터. 전기훈증기	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
	피. 수도 동결 방지기	① 수도 동결 방지기
	허. 보풀 제거기	① 보풀 제거기
	고. 산소이온발생기	① 산소이온발생기
	노. 전기정수기	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
	도. 초음파세척기	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
	로.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	①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
	모. 전기작동 도어록	① 전기작동 도어록
	보. 삭제 <2009.12.31>	삭제
	소. 삭제 <2009.12.31>	삭제
	7. 전기기기	오. 그 밖에 가목부터 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비고)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, 다음의 어느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	<p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1) 방폭형인 것</p> <p>2) 전기매트, 전기뜸질기, 안면사우나기, 적외선·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, 전기 맞사지기, 전기스팀사우나기기,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</p>	
8. 전동공구	대상없음	
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가. 텔레비전수상기	① 텔레비전수상기
	나. 영상모니터	① 영상모니터
	다.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	①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
	라. 비디오카메라	① 비디오카메라
	마. 튜너	① 튜너
	바. 편집기	① 편집기
	사. 디스크플레이어	① 디스크플레이어
	아. 라디오수신기	① 라디오수신기
	자. 앰프	① 앰프 ② 앰프내장형 스피커
	차. 리시버	① 리시버
	카. 음성기록계	① 음성기록계
	타. 음성플레이어	① 음성플레이어
	파. 오디오시스템	① 오디오시스템
	하. 전자악기	① 전자악기
	거. 위성방송수신기	① 위성방송수신기
	너. 비디오게임기구	① 비디오게임기구(텔레비전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, 액정 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표시장치를 갖는 구조의 것만 해당한다)
더. 비디오폰	① 비디오폰(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기기를 제외한다)	
러. TV영상프로젝터	① TV영상프로젝터	
며. 음질조절기	① 음질조절기 ② 이퀄라이저	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9. 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버. 오디오프로세서	① 오디오프로세서
	서. 신호변환장치	① AD/DA 변환장치
	어. 음성 및 영상분배기	① 음성 및 영상분배기
	저. 컴프레서 게이트	① 컴프레서 게이트
	처. 전자시계	① 전자시계
	커. CCTV 카메라	① CCTV 카메라
	터. 영상전송기	① 영상전송기
	퍼.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	①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
	허. 영상기록계	① 영상기록계
	고. A/V신호수신기	① A/V신호수신기
	노. 영상프로세서	① 영상프로세서
	도. CATV방송수신기	① CATV방송수신기
	로.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	①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
	모. 턴테이블	① 턴테이블
	보. 모듈레이터	① 모듈레이터
	소. 그 밖에 가목부터 보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비고)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.	
	가. 모니터	① 모니터
나. 프린터	① 프린터(정격입력이 6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바코드, 영수증, 통장, 프로터, 라벨, 그래픽전용인 것을 제외한다)	
다. 프로젝터	① 프로젝터	
라. 스캐너	① 스캐너	
마. 지폐계수기	① 지폐계수기	
바. 전자저울	① 전자저울	
사. 금전등록기	① 금전등록기	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	
10. 정보·사무기기	아. 어학실습기	① 어학실습기	
	자. 문서세단기	① 문서세단기	
	차. 천공기	① 천공기	
	카. 재단기	① 재단기	
	타. 제본기	① 제본기	
	파. 전자칠판 및 보드	① 전자칠판 및 보드	
	하. 동전계수기	① 동전계수기	
	거. 전동타자기	① 전동타자기	
	너. 전기소자기	① 전기소자기	
	더. 실물화상기	① 실물화상기	
	러. 입체영상기	① 입체영상기	
	머. 그 밖에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		
	비고)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.		
11. 조명기기	가. 형광램프용 스타터	① 램프용 글로우스타터 ② 램프용 전자식스타터	
	나. 백열등기구	① 백열등기구·전기스탠드(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) ② 샹데리아 등	
	다. 방전램프	① 형광램프 ② 무전극램프 ③ 수은램프 ④ 메탈할라이드램프 ⑤ 나트륨램프	

분류(군별)	품목명	세부범위
		(※ 칼라램프 포함)
	라. 기타 조명기구	① 크리스마스 휴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(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150W이하인 것에 한함)
	마. 기타 램프	① 백열전구 ② LED모듈(램프) ③ 할로겐전구 (※ 칼라램프 포함)
12.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	대상없음	

※ 제9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. 1.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됨,